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1998. 11. 2.
발 의 자 : 운 영 위 원 장

1. 제안경위

1998년 11월 2일 제56회 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신봉현 위원외 1인의 찬성으로 서면동의된 동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위원회안으로 채택키로 원안 가결함.

2. 제안이유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통합하여 공무원여비규정(1998.2.28. 대통령령 제15715호)으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마포구의회의원의 여비 지급등 관련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숙박료"의 명칭을 "숙박비"로 변경(안 제5조 제1항)
- "마포구의회의원의 국내출장시 지급하는 숙박비의 지급단가를 인상 함(안 별표1)
- 별표1의 비고 제3호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함(안 별표1)

4.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시행령(1997.7.9 대통령령 제15423호) 제15조
- 공무원여비규정(1998.2.28 대통령령 제15715호) 제10조, 제11조, 제16조등

5. 개정조례(안) : 별첨

6. 예산조치 : 기정예산을 활용

7. 재정부담에 대한 의견 : 특이한 사항 없음(기획예산과)

- 첨부 :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중 "숙박료"를 "숙박비"로 한다.

별표1 국내여비지급기준표(제6조 제1항 관련)중 "숙박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숙박비(10야당)
41,000
22,000

별표1 비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의회소재지 내에서의 여행(서울특별시내에서의 여행을 말한다)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4시간 미만인자에 대하여는 5천원을 지급한다.

별표1 비고 제3호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별표2 국외여비지급기준표(제6조 제2항 관련)에서 선박운임란중 "급행요금 또는"을 삭제한다.

별표2의 비고 제1호중 "국외여비규정 제16조 관련(별표2)"을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 제1항 관련(별표4)"으로 한다.

별표2의 비고 제2호중 "국외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 2. 24부터 적용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여비의종류) ①국내여행을 할때 지급 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일비, 숙박료, 식비로 구분한다.</p> <p>② (생략)</p> <p>별표1 국내여비지급기준표(제6조제1항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3%;"></td> <td style="width: 33%;">숙박료(10야당)</td> <td style="width: 33%;"></td> </tr> <tr> <td>(생략)</td> <td>41,000</td> <td>(생략)</td> </tr> <tr> <td></td> <td>19,500</td> <td></td> </tr> </table>		숙박료(10야당)		(생략)	41,000	(생략)		19,500		<p>제5조(여비의종류) ①----- -----숙박비, -----</p> <p>② (현행과 같음)</p> <p>별표1 국내여비지급기준표(제6조제1항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3%;"></td> <td style="width: 33%;">숙박비(10야당)</td> <td style="width: 33%;"></td> </tr> <tr> <td>(현행과 같음)</td> <td>41,000</td> <td>(현행과 같음)</td> </tr> <tr> <td></td> <td>22,000</td> <td></td> </tr> </table>		숙박비(10야당)		(현행과 같음)	41,000	(현행과 같음)		22,000	
	숙박료(10야당)																		
(생략)	41,000	(생략)																	
	19,500																		
	숙박비(10야당)																		
(현행과 같음)	41,000	(현행과 같음)																	
	22,000																		
<p>비고 1. 의회소재지 내에서의 여행(서울특별시 내에서의 여행을 말한다)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일비와 식비를 지급하여야 한다.</p> <p>2. (생략)</p> <p>3. 국내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표의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기전이라도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이조례를 개정·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p> <p>별표2 국외여비지급기준표(제6조제2항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3%;"></td> <td style="width: 33%; text-align: center;">선박운임</td> <td style="width: 33%;"></td> </tr> <tr> <td>(생략)</td> <td>· (생략) · (생략) ·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td> <td>(생략)</td> </tr> </table>		선박운임		(생략)	· (생략) · (생략) ·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생략)	<p>비고 1. 의회소재지 내에서의 여행(서울특별시 내에서의 여행을 말한다)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자에 대하여는 1만원, 4시간 미만인자에 대하여는 5천원을 지급한다.</p> <p>2. (현행과 같음)</p> <p>3. 공무원여비규정----- ----- ----- -----</p> <p>별표2 국외여비지급기준표(제6조제2항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3%;"></td> <td style="width: 33%; text-align: center;">선박운임</td> <td style="width: 33%;"></td> </tr> <tr> <td>(현행과 같음)</td> <td>·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td> <td>(현행과 같음)</td> </tr> </table>		선박운임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현행과 같음)						
	선박운임																		
(생략)	· (생략) · (생략) ·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생략)																	
	선박운임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현행과 같음)																	
<p>별표2 비고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등은 국외여비규정제16조관련(별표2)의 비고에서 정한 구분에 따른다.</p> <p>2. 국외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표의 국외여비지급기준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기전이라도 공무원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이조례를 개정·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p>	<p>별표2 비고 1. -----공무원여비규정제16조제1항관련(별표4)----- -----</p> <p>2. 공무원여비규정----- ----- ----- -----</p>																		